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사 선임절차 변경 및 위원장 권한 제한 등〉

- 박준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45호)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73호)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01호)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안)	1
I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안)	3
II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안)	5
IV. 검토의견	7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준태 · 서지영 · 박충권 · 최수진 · 김장겸 · 강승규 ·
권영세 · 성일종 · 고동진 · 강대식 · 조배숙의원
(11인)

나. 발 의 일 : 2025. 9. 19.

다. 회 부 일 : 2025. 9. 22.

※ 의안번호 : 1314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좌우하거나 호선 절차를 지연·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대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 따라서 간사 선임은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

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욱 · 송언석 · 최은석 · 김상훈 · 박덕흠 · 이달희 ·
서천호 · 조승환 · 김도읍 · 박수영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30.

다. 회 부 일 : 2025. 10. 1.

※ 의안번호 : 1337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면,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임. 그러나 최근 위원장이 위원회에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제1항).

Ⅲ.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나경원 · 광규택 · 박준태 · 김종양 · 서천호 · 조배숙 ·
인요한 · 추경호 · 고동진 · 신동욱 · 김성원 · 주진우 ·
송석준 의원(13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4.

다. 회 부 일 : 2025. 10. 27.

※ 의안번호 : 13701

2.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질서 유지 권한 및 위원회 운영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장이 이를 남용하여 위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지만, 특정 위원장이 일부 위원들에게 형식적인 토론기회를 부여한 뒤,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에 부치는 등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마다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를 제도화하고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위원 중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 나. 위원회의 경우 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와 관련된 규정의 준용을 제외함(안 제71조).
- 다. 회의 질서 유지 권한으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위원을 제외함(안 제145조제2항).
- 라.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8조).

IV. 검토의견

1. 간사 선임 절차 변경

(박준태의원안 · 이종욱의원안 · 나경원의의원안)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의 간사 호선 절차를 삭제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면 자동으로 간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박준태의원안	이종욱의원안	나경원의의원안
제 50 조 (간 사)	제 50 조 (간 사)	제 50 조 (간 사)	제 50 조 (간 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별로 간사 1 명을 둔다.	① ----- 각 교섭단체 대 표 의 원 이 추천하는 간 사----- -----.	① ----- 각 교섭단체별 로 소속 위원 중에서 추천 하는 간사--- -----.	① ----- ----- ----소속 위 원 중에서 추 천하는 간사- -----.
② 간사는 위 원회에서 호 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 고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간사 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간사를 선임 하고 위원장 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 고한다.	② 제1항의 간사를 선임 하고 위원장 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 고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 행과 같음)	③ ~ ⑤ (현 행과 같음)	③ ~ ⑤ (현 행과 같음)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1명씩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교섭단체에서 간사를 추천하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함으로써 간사 선임이 완료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음²⁾.

위원회에서 간사는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의사일정, 안건조정위원 선임, 의안 자동상정제도 적용 여부 및 안건의 소위원회 직접 회부 등에 있어서 협의의 주체가 되고, 위원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교섭단체의 추천만으로 간사가 결정될 경우,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1) 호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또는 그런 선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제정 국회법(법률 제5호, 1948. 10. 2. 시행)부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

「국회법」 제19조 위원회에는 위원 중에서 약간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간사가 호선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절차 규정(이종욱의원안)

개정안은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의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u>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제57조(소위원회) ① ----- ----- ----- ----- ----- ----- <u>소위원회의</u> <u>위원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합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며, 소위원회</u> ----- ----- ----- -----.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국회법」 제57조제8항³⁾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3)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제48조제1항4))을 적용하여, 상임위원의 선임·개선 절차와 동일하게 간사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선임 또는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실제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선임(개선)의 건”을 의결하는 경우와 간사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로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경우가 있음.

개정안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합의”는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 “협의”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교섭단체 간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오히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즉,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4)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표-4] 질의 또는 토론 종결동의 관련 규정

「국회법」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략)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법」 제60조⁵⁾에서는 위원회에서의 자유로운 질의·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발언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개정안은 위원회에서는 질의 또는 토론 종결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 의견 개선 기회를 보장하고,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질의와 토론은 안건심사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나,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동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5)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6) 「국회법」 제99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위원장의 발언 금지 및 퇴장 조치 규정 삭제(나경원의원안)

개정안은 위원장이 의원에 대하여 당일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생략)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u>의장</u> 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 ----- <u>의장</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원이 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당일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표-6] 질서유지권 행사 요건이 되는 국회법 위반 사항⁷⁾

- 의장(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국§99)
-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국§102)
- 발언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경우(국§104 · §105① · §122의2② · §122의3⑥)
-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는 경우(국§146)
-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국§147)
-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국§148)
-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경우(국§148의2)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국§148의3)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의원들에 대한 발언 금지 및 퇴장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이와 관련한 논란을 방지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언금지 및 퇴장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5.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 축소(나경원의원안)

개정안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에서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의사표현 수단은 제외하려는 것임.

7) 국회법해설 664~665p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 ----- -----물건(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의사표현 수단은 제외한다)----- --.

현행법에서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회의장 안에서 취식이나 껌연할 수 없고,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열독하거나 휴대전화기나 개인휴대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2005년 7월 28일 「국회법」 개정 시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⁸⁾.

이에 따라 피켓, 플랜카드 등이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개정안은 회의 진행 방해

8) <법률 제6266호> 「국회법」 제148조(껌연등의 금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음식이나 껌연을 할 수 없으며, 의안과 관련없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등을 열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회의의 회의장 안에서 개인휴대컴퓨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물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논쟁이 발생하거나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물리적인 피해'와 '의사표현 수단'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014